

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21년 2월 19일 조례 제1886호
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
(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
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일부개정 2025년 11월 20일 조례 제2330호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〈개정 2022. 1. 13〉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용청사”란 오산시의 시청, 의회, 보건소, 도서관,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말한다.
2. “공공시설”이란 오산시에서 건립하는 문화시설·체육시설·복지시설 등 오산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(이하 “공용청사 등”이라 한다)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오산시 일반회계 출연금
2. 교부금 및 보조금
3.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임차보증금
4. 기금의 운용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공용청사 등의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.

1. 공용청사 등 건립 부지·건물 매입비
2.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·리모델링비
3. 증축 또는 재건축에 따른 임시 사용을 위한 임대경비
4. 행정기구 신설,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용청사 임대보증금
5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

② 기금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국장, 기획예산과장,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,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1. 20>

1.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3. 그 밖에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, 적립,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

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공공시설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제15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「지방재정법」과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.

②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의 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·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,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과 「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. 13 조례 제1971호,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
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11. 20 조례 제233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㉑ 까지 생략